##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29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 강훈식 • 박선원 • 민형배

김성회 · 김한규 · 김병기

강선우 · 김승원 · 이정문

이소영 · 송기헌 · 문진석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양도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 로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역시 포함 되어 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용역업체 변경의 경우에는 양도·양수업체간의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양도 법리를 적용하여 포괄적 승계 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아파트 경비 근 로자 등은 잦은 용역업체 변경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실정임.

이에 용역업체 변경 시 새로 변경된 수탁 사업체의 사업주로 하여금 변경 전 수탁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수탁 사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고용 승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주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아파트 경비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수탁 사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 승계 등) ① 사업장 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수탁 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 변경된 수탁 사업체의 사업주는 변경 전 수탁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 사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승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주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5조의2(수탁 사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 승계 등) ① 사업장 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수탁		
	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		
	변경된 수탁 사업체의 사업주는		
	변경 전 수탁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 사		
	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승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주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